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 추가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6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 추가	2
※ 참고자료	7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8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Ⅲ. 검토의견

1.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 추가

개정안은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사유에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현행	개정안
	행위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6조의2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거나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짐¹⁾.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녹색기업 지정 현황]

년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기업수	204	202	195	179	164	152	139	131	123	111	103	97	96
신규	2	8	6	4	5	2	3	8	5	5	2	2	-

※ 출처: 환경부

현행법 제16조의3²⁾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를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녹색기업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동 행위가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녹색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³⁾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

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그린워싱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 하나인 ‘비방적인 표시·광고’까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녹색기업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하위 법령으로 위임⁵⁾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

4)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법체계상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541

-
- 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 카. 「하수도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에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 **(대상)**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정(3년 간)

□ **(운영체제)**

- 환경부·환경청·환경산업기술원 중심 제도 운영
- 전국녹색기업협의회*에서 녹색기업 총회·간담회 등 개최

* 기업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자치조직으로, '97년 지역별 협의회 구성 및 '01년 전국 협의회 창립

구분	환경부	환경청 *수도권대기청 제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기업 협의회
담당 업무	○ 운영 총괄 및 규정개정 등	○ 녹색기업 심사 ○ 지정 및 지정 취소 ○ 변경 및 사후관리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 우수녹색기업 시상 ○ 녹색기업 제도 홍보 ○ 녹색기업 간담회 개최 등	○ 총회·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개최 ○ 의견수렴·제도 주 요사항 전파

□ **(현황)** 96개소('24.6), 대·중견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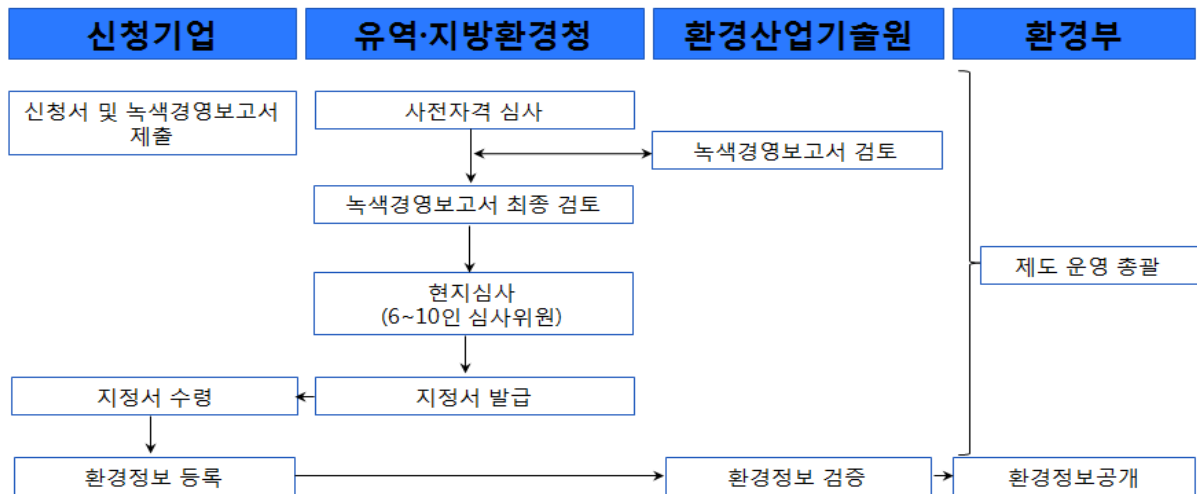
- 녹색기업 수는 '11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기업수	210	204	202	195	178	164	152	139	131	123	111	103	97	96
신규	20	2	8	6	4	5	2	3	8	5	5	2	2	

□ **(경과)**

- '1995.4 환경친화기업 출범(환경관리모범업소 폐지 → 환경친화기업)
- '2010.4 녹색기업 출범(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 명칭 변경)
- '2014.1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환경청장)

□ (운영방식)



○ (지정절차)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녹색경영보고서 접수 시 환경청에서 적합 여부 평가(시행령 제22조의7, 시행규칙 제33조의4, 운영규정 제6조)

1.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등
2.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3. 과거 3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4.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 적합한 경우 환경청장이 녹색경영보고서 검토·평가 실시
- ▶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보고서 검토를 기술원장에 의뢰
- ▶ 기술원장은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 제출
- ▶ 보완사항은 기업에 요구 및 수정 보고서 접수·재검토
- ▶ 환경청장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이면 녹색기업 심사단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타 항목 평가 실시
- ▶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준)** 평가항목은 업종에 따라 공통·특성지표로, 평가방법에 따라 정성·정량지표로 구분,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28호

<녹색기업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점 수	
			대기업	중소기업
공통지표	정성지표	녹색경영체계	100점	140점
		자원·에너지	80점	8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40점	150점
		사회적 책임	70점	30점
	정량지표	자원·에너지	120점	11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20점	90점
		사회적 책임	20점	-
특성지표		-	50점	-
총점		-	700점	600점
지정기준(총점의 80%)		-	560점	480점

- **(재지정)** 지정기간(3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재지정 기간 3년)
- **(지정취소)** 환경청장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되, 경미한 위반(개선명령·조치명령)인 경우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필수사항이 아님

- **(인센티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5항 및 제6항
 -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 검사 면제(대가·수질·폐기물 등)
 - 녹색기업 협력사업·환경개선 관련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등